

1. 개정이유

학대피해를 당한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설치의 근거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13제2항이 신설(2021.7.27. 신설 2022.1.28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

2. 주요내용

가.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·운영 기준 마련

- 1)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세부적인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의7 중 “법 제59조의13”을 “법 제59조의13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3조의8(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·운영 기준) 법 제59조의13제2항
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·운영기준은 별표 5의6과 같다.

별표 5의6의 제목을 “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·운영기준”으로 한다.

별표 5의6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시설기준

가. 건축물의 연면적은 최소 100m² 규모 이상으로 거실, 상담실, 화장실, 조리실, 의무실, 집단활동실, 비상재해대비시설, 그 밖에
입소장애인의 거주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나. 신규설치 및 이전 쉼터는 50m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
(나목3호제외)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 단,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업소
(청소년실을 갖춘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는 노래연습장업)가
있는 부지에는 설치할 수 있다.

다. 제4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

2. 인력기준

가. 배치기준: 시설장 1명,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

나. 시설장 및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- 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(시설장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한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)
- 2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
- 3)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」 제12조의2제1항·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
- 4)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시·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

3. 운영기준

가. 입소정원: 4명

나. 운영시간: 주 7일, 24시간 운영

다. 관리규정

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·시행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

하여야 한다.

- 1) 시설의 운영방침
- 2) 직제정원 및 직원 업무분장
- 3) 입소자의 처우요령
- 4) 입소이용 규정
- 5) 입소자의 생활수칙
- 6)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
- 7)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

4. 장부 등의 비치

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가. 관리에 관한 장부

- 1) 직원 관계철
- 2) 회의록철
- 3) 사업일지
- 4) 문서철
- 5) 문서 접수발송대장
- 6) 차량 운행일지
- 7) 안전점검표

나. 사업에 관한 장부

- 1) 입소자 관계 서류(상담기록카드, 입소자 카드 등)
- 2)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

3) 운영프로그램 관리대장(프로그램 운영일지 및 평가 관련 서류)

다. 재무·회계에 관한 장부

1) 총계정 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

2)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

3) 예산서 및 결산서

4) 비품 출납대장

5) 비품 관리대장

6) 재산대장·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7) 시설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

8)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3조의7(피해장애인 컴퓨터의 설치 · 운영 기준) 법 제59조의13에 따 른 피해장애인 컴퓨터의 설치·운영 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. <u><신 설></u>	제43조의7(피해장애인 컴퓨터의 설치 · 운영 기준) 법 제59조의13제1항-- ----- -----. <u>제43조의8(피해장애아동 컴퓨터의 설치 · 운영 기준) 법 제59조의13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컴퓨터의 설치·운영 기준은 별표 5의6과 같다.</u>